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97
----------	-------

발의연월일 : 2018. 10. 31.

발의자 : 박광온 · 송갑석 · 김영주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등).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 제2호 및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니하다.</p> <p>③ (생 략)</p> <p>④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u>당해</u>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 <u>해당</u> -----</p> <p>-----.</p> <p>-----.</p> <p>-----.</p>
<p>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 -----</p> <p>-----.</p> <p>-----.</p> <p>-----.</p> <p>-----.</p> <p>-----.</p> <p>-----.</p> <p>-----.</p>
<p>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u>당해</u>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p> <p>-----.</p> <p>-----.</p> <p>----- <u>해당</u> -----</p> <p>-----.</p> <p>-----.</p> <p>-----.</p>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 (생 략) ② 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u>당해</u>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실는 항만인 경우에는 <u>당해</u>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	1. <u>해당</u> ----- -----
2. <u>당해</u>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u>당해</u> 오염물질을 받는 자	2. <u>해당</u> ----- ----- - <u>해당</u> -----
3. 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u>당해</u> 계류시설의 관리자	3. ----- ----- <u>해당</u> -----
4. (생 략) ③ ~ ⑥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3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등의	제93조(사후관리) ① ----- ----- ----- -----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당해</u>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u>해당</u> .